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49호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2026. 7. 8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49호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「식품위생법」 (법률 제21299호, 2025. 12. 30. 개정·공포, 2026. 12. 31. 시행) 개정 에 따라 제조·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, Deoxyribonucleic acid)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3조제2항)

- 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한식간장, 양조간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혼합장·기타장류
- 2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당류
- 3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식용유지류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2 및 제12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1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114호, '26. 2. 27.~'26. 4. 30.)

2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('26. 6. 25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49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6년 7월 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조의2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”을 “제12조의2 및 제12조의3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,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제1항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”을 “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전단의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”을 “식품, 식품첨가물, 건강기능 식품 또는 축산물”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·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1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한식간장, 양조간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혼합장·기타장류
2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당류
3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식용유지류

제5조제8호 전단 중 “제3조제1항”을 “제3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를 “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 <제2026-49호, 2026. 7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(선적일 기준)에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다.·라. (생략)

2. ~ 7. (생략)

제3조(표시대상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%이하인 농산물과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표시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·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1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한식간장, 양조간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혼합장·기타장류

2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당류

3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식용유지류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1. -----

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
·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. 다만, 이 경우에는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2.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
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
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, 유
지류 등

제5조(표시방법) 유전자변형식품
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
다.

1. ~ 7. (생략)

8.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
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
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, 표시
대상 원재료 함량이 50%이상
이거나, 또는 해당 원재료 함
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
는 “비유전자변형식품, 무유전
자변형식품, Non-GMO, GM
O-free” 표시를 할 수 있다.
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
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----- 식품, 식품첨가물, 건
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. ---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5조(표시방법) -----

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3조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<p>9. (생략)</p> <p>제7조(재검토기한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 <u>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